

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개정(안)

법무처장 : 조미숙 ☎3410-7913 송무부장 : 강기언 ☎7920 담당 : 김예정 ☎7922

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 (25.1.3)을 반영하여 공사 정관의 관련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고자 그 내용을 시의회에 보고함

I 관련 근거

- 「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 - 조례 제5조 제1항(자본금) 수권자본금 현행 8조원에서 12조원으로 개정(25.1.3)

II 추진 경 위

- 2025. 1. 3. 「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개정
- 2025. 2.25. 수권자본금 증액 관련 정관 개정(안) 이사회 의결
 - 의결사항 : 정관 제4조(자본금) 제1항 개정

III 주요 개정 내용

- 정관 제4조 제1항(자본금) 개정
 - 조례 개정으로 수권자본금이 당초 8조원에서 12조원으로 개정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공사 정관에 반영하여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 유지

※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[시행2025. 1. 3.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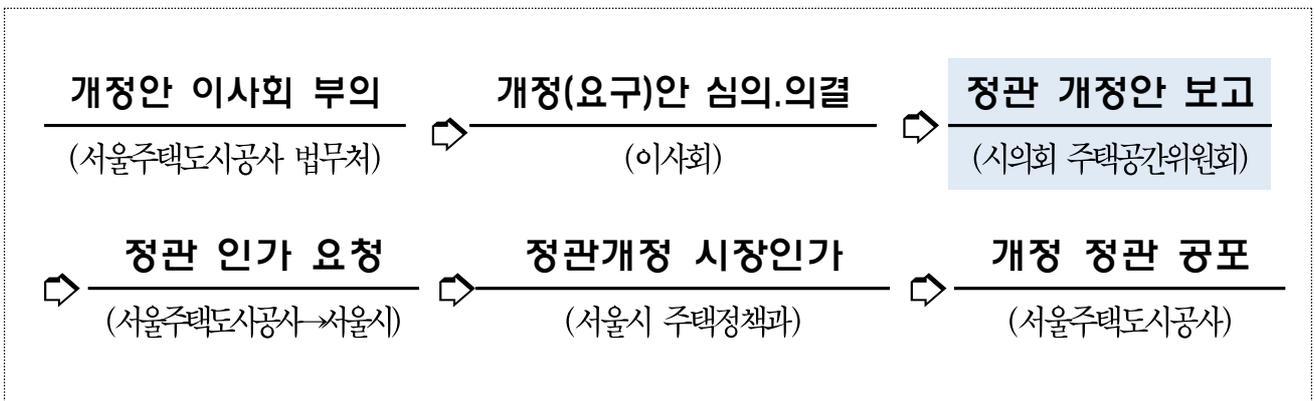
제5조(자본금)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12조원으로 하고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 라 한다)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.

② (생략)

IV 향 후 계 획

- '25. 5. : 정관 인가요청(서울주택도시공사 → 서울시)
- '25. 6. : 정관개정 시장인가(서울시)
- '25. 6. : 개정 정관 공포(서울주택도시공사)

< 참고 > 정관 개정 절차



. 끝.

[붙임] 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개정(안)

현 행	개 정 안	비 고
제4조(자본금) ①공사의 수권자 본금은 8조원으로 하고 그 전액 을 시가 출자한다. ② (생 략)	제4조(자본금) ①공사의 수권자 본금은 12조원으로 하고 그 전 액을 시가 출자한다. ② (현행과 같음)	
<u>〈신 설〉</u>	부 칙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	

◎ 서울주택도시공사정관 제 호

서울주택도시공사정관 개정

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제1항 중 “8조원”을 “12조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